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4월 5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6년 4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06년 4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김영의)

제안이유

- 시에 500만원 이상 고액채납자에 대한 징수업무를 분장하여, 체납세 징수의 효율적 추진으로 재정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기획재정국 세정과에 체납관리와 함께 추가로 체납세 징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도록 함. (안 제8조제2항제3호)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input type="radio"/> 없음	<input type="radio"/>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없음

나. 반대토론

없음

5. 심사결과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504호
의결 년월일	2006. 4. 19. (제126회)

제출년월일 : 2006. 4. 5.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시에 500만원 이상 고액채납자에 대한 징수업무를 분장하여, 체납세 징수의 효율적 추진으로 재정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기획재정국 세정과에 체납관리와 함께 추가로 체납세 징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도록 함. (안 제8조제2항제3호)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중 “체납관리”를 “체납관리(징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8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①(생략)</p> <p>②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2. (생략)</p> <p>3. 지방세 전반에 관한 기획·시세운영·세외수입·수납관리·법원민원·차량민원 및 <u>체납관리</u>에 관한 사항</p> <p>4. (생략)</p>	<p>제8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①(현행과 같음)</p> <p>②----- -----</p> <p>1.·2. (현행과 같음)</p> <p>3. ----- ----- -----<u>체납관리(징수)</u> -----</p> <p>4. (현행과 같음)</p>